

제6절 졸업과 학위

제52조(졸업논문) ① 본 대학교 소정의 전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정한 바에 따라 졸업논문을 제출하고 심사에 합격하여야 한다. 다만, 교육과정의 성질상 논문 제출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학과에 대하여는 따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실험실습보고 및 실기 발표 또는 졸업종합시험으로 이에 대체할 수 있다.

1. 졸업논문의 제출시기는 최종학기 소정기일 내로 하고 졸업논문 심사에서 불합격된 자는 재학연한 내에 재제출할 수 있다.
 2. 지도교수는 전임교원 중에서 최종 학년 초까지 위촉되어야 한다.
 3. 논문은 1명 이상의 교수가 실기발표는 최소 2인 이상의 교수가 심사하여 통과(합격)여부를 판정한다.
 4. 실기발표는 공고를 통하여 공개되어야 하며 공동으로 발표할 수 있되, 개개인의 능력이 판단될 수 있어야 한다.
- ② 졸업논문 절차를 밟지 않은 자는 수료증만 교부한다.
- ③ 기타 졸업논문 시행에 필요한 세칙은 별도로 정한다.
- ④ 1학기말에 졸업에 필요한 요건을 갖춘 학생은 후기 졸업을 할 수 있다.

졸업논문 시행 규정

제 정 : 1976.04.01

최근개정 : 2013.08.21

제1조(목적) 본 규정은 학칙 제52조 졸업논문 시행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논문 구별) 졸업논문은 논문으로 제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졸업연주회, 졸업작품전, 졸업공연, 실험실습 보고로 이를 대체할 수 있다.[2007.6.13개정][2013.8.21개정]

제3조(논문 제출 자격) ① 졸업논문을 제출할 수 있는 학생의 자격은 제8학기 등록을 마치고 재학하는 자로서 졸업기준(취득학점, 교과과정 이수조건 등)에 결격사유가 없고 지정된 일정에 따라 논문지도 및 절차를 거쳐야 한다.

② 복수전공자의 제2전공 논문은 졸업직전 학기 중 제출하고, 기타 자격요건은 전항과 같다.

제4조(논문작성 계획서 제출) ① 졸업예정자는 졸업 2학기 전 지정된 기한 내에 졸업논문 작성 계획서를 소속 학과장을 경유 교무처장에게 제출해야한다

② 논문작성은 단독연구를 원칙으로 한다.

제5조(논문지도교수) ① 논문지도교수는 학과장이 총장의 승인을 얻어 전임교수 중에서 위촉한다.

② 지도교수는 졸업논문 작성의 전 과정을 지도해야 하며, 이를 위해 논문연구반(콜로퀴움)을 첫 학기에 편성 운영할 수 있다.

③ 졸업연주회 및 졸업작품전은 전항의 규정에 준하며, 종합시험으로 논문에 대체하는 경우에는 종합시험 관리위원회를 구성한다.

제6조(졸업논문 작성 단계) 졸업논문은 다음 <표 1>과 같이 4단계로 작성하여 단계별 지정기일까지 각 학과장에게 제출하고 학과장은 제출 마감일로부터 5일안에 그 결과를 교무처장에게 보고해야 한다.[2006.10.11개정][2008.1.23개정]

<표 1> 졸업논문 작성 단계

구 분	규 격	제 출 기 일	
		전기졸업 예 정 자	후기졸업 예 정 자
논문개요 제 출	A4*3매 내외의 개요 및 참고자료 목록 첨부	7학기초 4월 7일	7학기초 9월 30일
초고제출	A4*(5매~10매)	제8학기 등록 전	제8학기 등록 전
원고제출	A4*15매 내외	10월 31일	4월 31일
완성된 졸업논문	따로 정하는 체제로 제본 및 CD로 제출함	기말고사 전까지	기말고사 전까지

제7조(논문심사) ① 논문심사 위원은 학과장의 제청으로 총장이 선정하며 논문 지도교수를 포함 할 수 있다.

② 심사위원은 1인 이상으로 구성하며, 심사는 합격·불합격으로 판정한다.

제8조(논문심사 결과조치) ① 소정의 전 과정을 이수하고도 논문심사에 불합격한 자에 대하여는 학위를 수여치 않고 수료자로 간주한다.

② 논문심사에 불합격한 자가 논문을 재 제출하여 합격하였을 때에는 학위를 수여하고 졸업을 인정하되, 졸업정원 기준에 해당되어야 한다.

③ 졸업논문 심사에서 불합격된 자는 재학연한 내에 논문을 재 제출할 수 있다.

제9조(졸업소요학점 미달자에 대한 조치) 졸업논문 심사에 합격한 자가 졸업기준에 미달되어 졸업을 할 수 없는 경우에도 논문심사 합격자격은 유효하다.

제10조(졸업연주) ① 음악대학 및 사범대학 음악교육과는 졸업논문을 대신하여 졸업연주를 실시한다.[2007.6.13개정]

② 졸업연주는 상당수준의 곡을 10분 내외로 연주하되, 건반악학부 반주전공을 제외한 모든 전공은 암보로 연주해야 한다.[2007.6.13개정]

③ 작곡 전공자는 10분내외의 졸업 작품을 연주해야 하며, 졸업논문으로 대체할 수도 있다.[2007.6.13개정]

④ 졸업연주회는 2학기에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, 필요할 경우 1학기에 실시할 수 있다.[2007.6.13개정]

제11조(졸업연주 계획서) 졸업연주 대상자는 졸업 2학기 전 소정의 기간 내에 실

기발표 계획서를 소속 학과장에게 제출한다.

제12조(졸업연주 심사 및 판정) ① 졸업연주 심사위원의 선정은 제7조 논문심사 규정에 준한다.

② 졸업연주의 심사는 100점 만점으로 평가하여 심사위원이 평가한 점수의 평균이 70점 이상이어야 합격으로 판정한다.

제13조(졸업작품전) 공과대학 건축학부, 미술대학은 졸업논문을 대신하여 졸업작품전을 개최하며, 사범대학 미술교육과는 졸업논문 또는 졸업작품전을 할 수 있다.[2007.6.13개정][2008.5.14개정]

제14조(졸업작품규격) 졸업작품에 관한 세부사항은 해당학부(과)의 내규에 의하며, 해당학부(과)는 관련 내규를 교무처에 제출해야 한다.[2010.1.27개정]

제15조(졸업작품 심사 및 판정) 졸업작품 심사 및 판정은 제12조 규정에 준한다.

제16조(작품전 개최일정) 작품제작과정, 작품제출 및 작품전 개최일정과 기타 세부사항은 단과 대학장이 정한다.

제17조(졸업작품의 보관) 미술대학의 졸업작품은 1년간 학교에서 보관한다.

제18조(기타사항) 이 규정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필요에 따라 각 단과대학장이 교무처장의 승인을 얻어 시행한다.

부 칙

- (1) 본 규정은 1976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.
- (2) 본 개정규정은 1990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.
- (3) 본 개정규정은 1993년 5월19일부터 시행한다.
- (4) 본 개정규정은 1999년 5월26일부터 시행한다.
- (5) 본 개정규정은 2002년10월 9일부터 시행한다.
- (6) 본 개정규정은 2007년 6월13일부터 시행한다.
- (7) 본 개정규정은 2008년 1월23일부터 시행한다.
- (8) 본 개정규정은 2008년 5월14일부터 시행한다.
- (9) 본 개정규정은 2010년 1월27일부터 시행한다.
- (10) 본 개정규정은 2013년 8월21일부터 시행한다.

컴퓨터공학부(융합컴퓨터미디어학부) 졸업작품·논문 시행 내규

제1조(목적) 이 내규는 학칙 제53조 및 학사시행세칙 제27조 1항과에 의거 컴퓨터공학부(융합컴퓨터미디어학부 포함, 이하 학부) 학생의 졸업 요건에 관한 세부 사항과 그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대상) 학부 졸업대상 학생과 복수전공으로 “컴퓨터공학전공”이나 “멀티미디어콘텐츠전공(융합미디어전공)”으로 졸업하고자 하는 학생으로 한다.

제3조(졸업작품·논문 신청 및 심사)

1. 대학원진학 예정자는 졸업작품을 논문으로 대신할 수 있다.
2. 신청 : 졸업작품·논문 신청은 6학기초 지도교수의 확인을 받아 학부사무실에 졸업작품·논문 계획서를 제출한다.
3. 졸업작품·논문발표 :
 - 1) 졸업해당학기 종강전에 정해진 기간에 졸업작품 발표회를 실시한다. 구체적인 시기는 학사운영을 고려하여 정한다.
 - 2) 학부 학술제에 작품을 출품하여 발표한 학생은 졸업작품 심사를 통과한 것으로 본다.
4. 졸업작품·논문 심사 및 재심사 : 졸업작품·논문의 심사는 지도교수를 포함한 2명 이상의 학부교수가 졸업작품·논문을 심사하여 가·부를 결정한다. 심사에 통과하지 못한 경우 재심사 기회를 줄 수 있다.
5. 졸업작품·논문 심사에 합격한 학생은 “졸업작품 및 시험”교과목을 통과한 것으로 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.

컴퓨터공학부장 여 상 수



2014학년도 학부(과)별 졸업논문 내규 현황

2014학년도(후기) 졸업 기준

대학명	학부(과)/전공	구분	내용	비고
공과대학	건축학부 건축공학	졸업작품	1. 자격 : 건축공학설계2와 Capstone Design 이수 cf. 조기졸업예정자 건축공학설계2 또는 Capstone Design 이수 2. 내용 : 연구의 배경, 목적, 범위, 내용 및 결과, 참고문헌 등 합축적으로 자유롭게 구성 3. 규격 : Abstract 4쪽 분량 작성, 포스터(규격:600×900mm)전시/발표(▶ 완성본 파일 제출) 4. 지도교수 : 학부장 및 건축공학설계2/Capstone Design 담당교수와 공동지도 5. 심사위원 : 건축공학설계2/Capstone Design 담당교수 및 전임교수 각 1인	※ 건축학부 2001학년도 이전 입학자 건축학(5년)전공, 건축공학 중 자신의 해당전공분야에 따라 졸업작품 항목중 선택적용
	건축학부 건축학(5년)	졸업작품	1. 자격 : 건축설계7, 8 이수 cf. 건축학전공(01이전 학번) 건축설계 5 또는 6 2. 내용 : 기본설계, 개념 표현하는 도식, 투시도 및 기타내용 이해하기 위한 도면/모형 전시 3. 규격 : 패널(900×1800mm)/모형(900×900×900mm) ※ 변경가능 4. 지도교수 : 학부장 및 건축설계7,8{cf. 건축학전공(01이전 학번) 건축설계 5/6} 담당교수와 공동지도 5. 심사위원 : 건축설계7,8{cf. 건축학전공(01이전 학번) 건축설계 5,6} 담당교수 및 전임교수 각 1인	※ 건축학부 2001학년도 이전 입학자 건축학(5년)전공, 건축공학 중 자신의 해당전공분야에 따라 졸업작품 항목중 선택적용
	지능로봇공학과	졸업작품	1. 자격 : 로봇제작프로젝트1,2이수 2. 작품연구계획서+졸업작품+포트폴리오파일제출 cf. 연구계획서 제출이후 5회이상 작품지도교수의 지도 충실 이행 3. 지도교수 : 학과장 및 작품지도교수와 공동 지도→심사위원:전체 학과교수	
	전자공학과	졸업작품/ 논문	1. 자격 : 본교소정의교육과정을이수한자(졸업예정자) 2. 졸업작품 : 1인1작원칙 cf. 2인 이상 지도교수 동의 3. 작품주제 : 캡스톤디자인통해제작 cf. 원칙과 다를 경우 지도교수 동의	
	도시공학과	졸업논문	1. 자격 : 종합설계및실무1,종합설계및실무2이수(8학기재학자로졸업기준결격사유없어야함) 2. 졸업논문 또는 졸업작품 : 판넬(90cm×180cm, 지도교수 상의 후 변경가능)/모형(규격제한 없음) 3. 작품평가-논문주제 발표(1차 품평회)→중간품평회와 최종품평회 실시 통해 지도 및 심사	
	신소재화학공학과	졸업작품/ 시험	졸업시험(3과목) : 각 과목별 60점이상(60점 이하 과목 재시험 2회) ※과목:고분자합성, 고분자가공, 무기재료공학	2010학년도 입학자까지

대학명	학부(과)/전공	구분	내용	비고
	융합컴퓨터·미디어학부	졸업작품/시험	졸업작품:학술제 출품, 발표→심사(지도교수 포함 2명 이상, 심사 미통과시 재심사 기회 부여) ※대학원 진학 예정자 졸업논문 대체 가능	※복수전공자 포함 적용
	정보통신융합공학부	졸업작품	1. 자격 가.공학교육 일반프로그램 과정-학점이수 기준 및 "졸업작품" 교과목 학점취득 충족자 나.공학교육 심화프로그램 과정-"공학교육 심화프로그램 이수요건" 학점 기준 및 12가지 학습성과 달성 최소요건 충족자 2. 졸업작품(팀 구성 공동 제작 可), 1 학기 : 중간발표를 통한 중간점검 및 평가→ 2 학기 : 학술제 출품 전시 및 졸업작품 발표/심사→ 합격자 : 졸업작품결과보고서 작성·제출	

※참고사항 : 논문심사 1인이상, 실기발표는 2인이상-cf.학칙 제52조(졸업논문) 3. 참조

2015 ~

2017학년도 학부(과)별 졸업논문 내규 현황

2017학년도(전기,후기) 졸업 기준

대학명	학부(과)/전공	구 분	내 용	비고 / 경과조치
공과대학	건축학부 건축공학	졸업작품	1. 자격 : Capstone Design1와 Capstone Design2 이수 cf. 1. 조기졸업예정자 Capstone Design1 또는 Capstone Design2 이수 2. 건축공학전공(13학번 이전) 건축공학설계2와 Capstone Design 이수 2. 내용 : 연구의 배경, 목적, 범위, 내용 및 결과, 참고문헌 등 함축적으로 자유롭게 구성 3. 규격 : Abstract 4쪽 분량 작성, 포스터(규격:600×900mm)전시/발표(▶완성본 파일 제출) 4. 지도교수 : 학부장과 Capstone Design1 / Capstone Design2 담당교수와 공동지도 5. 심사위원 : Capstone Design1 / Capstone Design2 담당교수 및 전임교수 각 1인	이수교과목 수정
공과대학	건축학부 건축학(5년)	졸업작품	1. 자격 : 건축설계G1,G2 이수 cf. 건축학전공(01이전 학번) 건축설계 5 또는 6 2. 내용 : 기본설계, 개념 표현하는 도식, 투시도 및 기타내용 이해하기 위한 도면/모형 전시 3. 규격 : 패널(900×1800mm)/모형(900×900×900mm) ※ 변경가능 4. 지도교수 : 학부장 및 건축설계G1,G2{cf. 건축학전공(01이전 학번) 건축설계 5/6} 담당교수와 공동지도 5. 심사위원 : 건축설계G1,G2{cf. 건축학전공(01이전 학번) 건축설계 5,6} 담당교수 및 전임교수 각 1인	
공과대학	지능로봇공학과	졸업작품	1. 자격 : 로봇제작프로젝트1,2이수 2. 작품연구계획서+졸업작품+포트폴리오파일제출 cf.연구계획서 제출이후 5회이상 작품지도교수의 지도 충실 이행 3. 지도교수 : 학과장 및 작품지도교수와 공동 지도→심사위원:전체 학과교수	
공과대학	전자공학과	졸업작품/ 논문	1. 자격 가. 본교 소정의 교육과정을 이수한자(졸업예정자) 나. 캡스톤 디자인 1,2이수 2. 졸업작품 : 팀별 공동제작 가능 3. 졸업논문은 1인 1논문 4. 작품주제 : 캡스톤디자인 통해 제작 ※ 주제 선정 및 중간 발표를 통한 중간 점검 시 지도교수와 동의	자격 이수교과목 추가 졸업작품 제작 수정 : 1인 1작 > 팀별 공동제작
공과대학	도시공학과	졸업논문	1. 자격 : 종합설계및실무1, 종합설계및실무2이수(8학기재학자로졸업기준결격사유없어야함) 2. 졸업논문 또는 졸업작품 : 패널(90cm×180cm, 지도교수 상의 후 변경가능)/모형(규격제한 없음) 3. 작품평가-논문주제 발표(1차 품평회)→중간품평회와 최종품평회 실시 통해 지도 및 심사	

대학명	학부(과)/전공	구 분	내 용	비고 / 경과조치
공과대학	신소재화학공학과	졸업작품/ 시험	졸업시험 ※필기시험 : 고분자합성, 고분자가공, 무기재료공학 각각 60점이상 (60점 이하 과목 재시험 2회) ※발표시험 : 제품 설계(캡스톤디자인) 프리젠테이션 발표 (심사위원:지도교수 포함 2명이상)	2016.02 졸업부터 (2015학년도 1학기 학점이수기준 충족자는 제외)
공과대학	융합컴퓨터·미디어학부	졸업작품/ 시험	1. 자격 : 캡스톤 디자인 1,2이수 8학기(조기졸업대상자는 7학기) 이상 재학자로 졸업기준 결격사유 없어야 함. 2. 유형 : 졸업작품 혹은 졸업논문 졸업작품은 팀별 공동 제작가능, 졸업논문은 1인 1논문 3. 평가 : 졸업작품(논문)계획서 → 졸업작품(논문) 발표 → 졸업작품(논문)결과 보고서 제출 학술제 출품/전시/발표 혹은 졸업작품(논문) 발표/심사 지도교수 포함 2명 이상 심사. 심사 미통과시 재심사 기회부여	※복수전공자 포함 적용
공과대학	정보통신융합공학부	졸업작품	1. 자격 가.공학교육 일반프로그램 과정-학점이수 기준 및 "졸업작품" 교과목 학점취득 충족자 나.공학교육 심화프로그램 과정-"공학교육 심화프로그램 이수요건" 학점 기준 및 12가지 학습성과 달성 최소요건 충족자 2. 졸업작품(팀 구성 공동 제작 可), 1 학기 : 중간발표를 통한 중간점검 및 평가→ 2 학기 : 학술제 출품 전시 및 졸업작품 발표/심사→ 합격자 : 졸업작품결과보고서 작성.제출	

※참고사항 : 논문심사 1인이상, 실기발표는 2인이상-cf. 학칙 제52조(졸업논문) 3. 참조